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47호
- 나. 제출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으로 하여금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를 위한 건강 증진 지원의 책무와 갱년기 증후군 추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구청장으로 하여금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 함(안 제5조)

4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16조의2, 제16조의3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갱년기 증후군은 모든 중년의 적이라는 악명이 붙을 정도로 정신적·육체적 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, 극심한 감정 기복과 함께 우울감, 불면증, 안면 홍조 등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남.
-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갱년기 질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확한 분석 및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보건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
- 고혈압·당뇨병·치매 등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06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 12. 1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[제목개정 2019. 12. 3.]

제16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·시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·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